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91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민형배·서미화·정동영

이개호 • 백혜련 • 이수진

정성호 • 이용선 • 김문수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 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 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을 위하여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①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을
	위하여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
	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
	<u>청받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u>
	료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
	<u>다.</u>
⑪ (생 략)	<u>⑩</u> (현행 제11항과 같음)